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한국항공대학교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19.1.7		16		
2	2020.8.24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구성원을 성폭력 및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성폭력 및 성희롱의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행위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신체적, 물리적 수단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체적 행위

가.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행위

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라.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3. 시각적 행위

가.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③ 성차별이라 함은 개인의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의 공적인 생활에서 특정한 성에 부당한 차별을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정관에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그 밖에 학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

는 제 3자가 가해자, 동조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및 성희롱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사건처리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7〉

② 사건처리 관계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상 알게 된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7〉

③ 피해자 및 참고인들은 상담소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9.1.7〉

제2장 담당기관

제1절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

제8조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성희롱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및 기록
2.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보고
4. 성폭력, 성희롱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6. 담당자들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 지원 〈신설 2019.1.7〉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 및 성희롱의 예방 및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장으로 한다. 사무처장, 교무처장, 학생지원팀장, 책임상담연구원, 피해자가 관련된 주무부서장(주무부서장 부재 시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피해자가 교수일 경우 교원 3인, 직원일 경우 직원 3인, 학생일 경우 학생 3인을 추천 위원으로 선임한다. 전체 위원들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1.7〉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단 유고 및 부재 시, 교무처장이 위원장을 대신한다. 〈개정 2019.1.7〉

③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내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 상담연구원을 간사로 둔다.
- ⑥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성별 구성에 맞추어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9.1.7, 개정 2020.8.24>

제11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중재
- ②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 ③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상담소에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처리 요청이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 한다.

- ②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성희롱 사건의 처리

제13조(신고 등) ① 상담소는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와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상담소에 대하여 성폭력·성희롱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한 대리인이나 제3자는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③ 상담소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상담소장은 신고 된 사건의 조사 및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④ 상담소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이전에 사건당사자간의 합의를 중재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심의결과에 따라 제2항에 명시된 조치를 시행한다. 그리고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교원의 경우는 교무처, 직원의 경우는 사무처, 학생의 경우는 학생처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대면 사과 <개정 2019.1.7>
 2. 가해자에게 성폭력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개정 2019.1.7>

3.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분리조치 <개정 2019.1.7>

4. 가해자의 사회봉사

5. 기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조치

③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